

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1326호
- 다. 제출일자: 2020. 2. 5.
- 라. 회부일자: 2020. 2. 12.

### 2. 제 안 사 유

- 월경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에 대한 도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주변국 도시간의 국제협력 조항을 신설하여, 국제협력을 위한 상설 국제기구를 구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,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,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해 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 규정 신설.
- 나.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

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구축(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)

다.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(안 제24조의2제2항제2호)

라. 대기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안 제24조의2제2항제3호)

마.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지원  
(안 제2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24조의2제3항)

바. 대기질 개선 활동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 유치 및 지원  
(안 제24조의2제2항제5호)

사.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지원  
(안 제24조의2제2항제6호)

#### **4. 참 고 사 항**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10.31.~11.20.) 결과: 의견없음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,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‘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(East Asia Clean Air Cities Network, 이하 협의체)’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의 약 50%는 국외에서 배출되어 유입된 것이고 고농도 시에는 최대 80%까지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<sup>1)</sup>. 이 결과는 서울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·내외 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.
-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국제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간 추진해 온 국제협력 사업은 정보 교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, 실제 협력 당사국 또는 도시들 간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의 실행까지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
- 서울시는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구를 유치 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1) 초미세먼지(PM-2.5)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(서울특별시, 2016), 고농도 초미세먼지 국내외 기여율 분석 결과(국립환경과학원, 2018)

제1항제4조2)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또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추진해 오고 있음.

- 일례로 서울시에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클레이<sup>3)</sup> 동아시아본부는 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제3호를 근거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.

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이고,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협의체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국제기구로, 설립주체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.

**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」**

제16조(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)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당해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·외 홍보
2. 당해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
- 3.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**
4.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
5. 기타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설립 주체가 서울시인 국제기구로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(WeGO)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(GSEF) 및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등이 있으며, 이들은

2)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~3. (생략)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) ICLEI(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)

각각 별도의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안 제24조의2제2항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관련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제1호에 협의체 구축을 규정하고 있고,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협의체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는 등 협의체 구축과 협의체의 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등 조문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바,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임.